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30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원을 공유재산심의회에 포함시켜 의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고 금천구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제3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7조)
- 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제3항)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51조

5.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며, 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공유재산의 관리를 감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대상자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신설하고,
 -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체납내역, 불법 무단 사용 여부를 신설하고,
 -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실태 조사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 자료에 기록해야 할 추가 사항으로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을 규정함.
 -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조치계획 수립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용·대부료 체납대책을 추가 신설함.
 -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규정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보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议회의 의결사항과 별개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议회의 집행 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제처에서는 의견을 제시(법제처 의견21-0015)하고 있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신 제출로 완화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금천구 공유재산 업무 로드맵. 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2018. 12. 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4.]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금천구 공유재산 업무 로드맵

(2024년도 기준)

1월중

-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 감정평가 업무 약정체결 및 운영계획 수립
- 1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수시분)

3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수시분)

4월중

- 2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5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수시분)

7월중

- 3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8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수시분)

9월중

- 시유재산 무상사용 자기계약을 위한 심의회 자료 제출

10월중

- 차년도 공제회 예산편성을 위한 공제등록 수요 조사
- 4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1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정기분)

12월초

-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공제등록대상 변동사항 조사

12월중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